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강화대교 등 43개소] 설계서

2026. 03.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설계자	심사자	출장소장	소 장
2026년 3월 일 설계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강화대교 등 43개소] 설계서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목 차 -

I.	용	역	설	명	서		
II.	일	반	과	업	지	시	서
III.	특	별	과	업	지	시	서
IV.	보		안		대		책
V.	예		정	공		정	표
VI.	설		계	예		산	서

I . 용 역 설 명 서

I. 용역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 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며,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기능적 결함 상태를 관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2026년도 상반기)

3. 과업 대상 시설물 : 시설물 43개소(교량 32개, 보도육교 2개, 터널 2개, 사면 6개, 옹벽 1개)

과업 대상 시설물 현황

순번	시설물	위 치	종 별	제 원		비고
				연장(m)	준공년도	
1	강화대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	780	1997	교량
2	고촌램프D육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2	129	2013	교량
3	김포아라대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2-5	1	550	2011	교량
4	향산2교 RAMP-A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33-13	2	150	2024	교량
5	향산2교 RAMP-B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32-5	2	227	2024	교량
6	향산2교(상)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2	210	2006	교량
7	향산2교(하)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2	210	2006	교량
8	군하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85-1	3	84	1997	교량
9	누산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59-24	3	90	2014	교량
10	마송IC교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429-14	3	30.2	2014	교량
11	신곡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19, 신곡리 532-133	3	34.1	2003	교량
12	오리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134-34, 월곶면 갈산리 437-3	3	50	1997	교량
13	장곡IC육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곡로 65-1, 고촌읍 태리 294-7	3	45	2003	교량
14	천등IC육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고촌읍 풍곡리 229-9	3	40	2003	교량

순번	시설물	위 치	종 별	제 원		비고
				연장(m)	준공년도	
15	태리IC램프A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57-1	3	39.9	2003	교량
16	태리IC램프D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50-2	3	80	2003	교량
17	태리IC육교(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58-1	3	40	2003	교량
18	태리IC육교(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58-1	3	40	2003	교량
19	향산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39-12	3	20	2003	교량
20	갑곶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8-9	기타	15	2019	교량
21	대산2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산 77	기타	90	2019	교량
22	부근1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39-3	기타	30	2019	교량
23	부근2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186-1	기타	15	2019	교량
24	서촌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44-3	기타	30	2019	교량
25	솔정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344-2	기타	30	2019	교량
26	신봉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32	기타	30	2019	교량
27	옥림1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560-6	기타	30	2019	교량
28	옥림2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455-1	기타	30	2019	교량
29	옥림IC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781-1	기타	40	2019	교량
30	용정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757-6	기타	30	2019	교량

순번	시설물	위 치	종 별	제 원		비고
				연장(m)	준공년도	
31	하도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술정리 922-2	기타	40	2019	교량
32	계양천교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51	기타	42	2025	교량
33	신곡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33-23	3	35.6	2003	보도육교
34	태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태리 297-11	3	41.5	2003	보도육교
35	옥림터널(상)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산24-1번지	2	230	2019	터널
36	옥림터널(하)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산24-1번지	2	230	2019	터널
37	절토사면(STA.1+110~1+386.4(좌))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46-1	2	276	2019	사면
38	절토사면(STA.1+430~1+830(좌))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42	2	400	2019	사면
39	절토사면(STA.1+430~2+110(우))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42	2	680	2019	사면
40	절토사면(STA.9+304~9+510(우))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산61-1	2	206	2019	사면
41	김포 월곶 군하 I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63-5	2	205	1997	사면
42	김포 월곶 군하 II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29-20	2	460	2000	사면
43	보강토옹벽(STA.2+157.750~2+287.500(R))	강화군 하저면 장정리761	2	145	2019	옹벽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이하 “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2023.12,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차.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12, 국토교통부, 이하 “매뉴얼”이라 함)

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점검 시설물(교량 등)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 비용의 계상은 “지침” 제55조를 준용한다.
-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제1종, 제2종, 제3종 및 기타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 시설물의 세밀육안검사(외관조사) 및 측정(필요시)
- 주요 결함부위에 대한 보수·보강대책 및 공법결정 제시(필요시)
- 검사대상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 및 손상·보수물량 등 작성(하자/비하자 구분 작성)
- 안전등급 평가(양호/보통/불량)
- 제1종·제2종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지침_공통편” 부록3의 보고서 표준서식 및 붙임의 보고서 서식 사용) 및 제출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점검보고서 등록(정기안전점검 상반기 6/30)
- 차량방호책(가드레일) 확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 및 보고하여야 한다.

나. 안전등급 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지침의 표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고 상태에 따라 안전등급 (A/B/C/D/E)을 평가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정기안전점검보고서는 부록의 시설물 종별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지침 부록의 시설물 종별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시설물만 작성한다.

4)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 기타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및 점검 사진대지만 작성한다.

4.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별표13)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5. 과업수행 지침

-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바.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 사.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보고서에 수록한다.
- 아.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 조사 사항을 검토 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자.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한다.
- 차. **중간(결과)보고자료 및 성과품(보고서) 작성 시 이전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및 [별표2]에 따른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같은법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또는 제65조(벌칙)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과업수행 수칙

-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시에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14일 이내에 참여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 투입인원, 투입장비, 점검사진)과, 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 SNS 등)하여야 하며, 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의 하자 조사 및 물량 산출 요령

가. 정기안전점검용역 대상 시설물 중 아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물량은 별도 산출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및 준공한 도로건설공사
- 2)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용역)

나. 정기안전점검용역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 소에서 시행한 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감독관에게 최근 시행한 보수공사의 준공서류(준공도면 등)를 제공받아, 당해 용역에서 발생한 시설물 부재의 손상(파손) 위치와 시설물 보수공사의 보수 위치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도로건설공사의 하자만료기간은 감독관에게 요청 필요)

다. 하자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물량 산출 시 붙임2의 양식을 활용하여 하자보수 물량 산출표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후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이메일 등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유지관리 실적보고를 상반기 정기점검결과는 6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승인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급자는 협조와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라. 본 과업 대한 **중간보고는 60일(6월 30일 기준) 이내, 결과보고는 6월 30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 중간(결과)보고시 용역 요약 보고서(A4) 4부, 과업수행 차트(A3)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최종 보고서는 상기 각항에 제시된 과업수행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 내용 체계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 작성은 한글과 한문의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표기는 교육부제정 영문표기법에 따르며,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의 제출

- 종합보고서 총 2부
- USB보고서 2부
- 손상현황및외관조사망도(CAD파일,PDF)(구조물별)
- 하자검사보고서(HWP,PDF,EXEL)(구조물별)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기 보고된 용역 실적정보 수정/보고 후 캡처화면 제출
- 건설사업정보화 포털시스템(CALS)의 시설물유지관리 납품파일 작성 후 제출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점검결과보고서 등록

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자료, 결과보고자료 및 준공계는 문서24*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24)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공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https://open.gdoc.go.kr/index.do>)

IV. 보안대책

IV. 보 안 대 책

1.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 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V. 예정 공정표

V.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30일		45일		60일		90일		120일		비 고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검사결과 종합분석											
안전등급 지정											
과업중간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상반기 성과품 제출											

VI.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출장소장	소 장
2026년 3월 일 설계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강화대교 등 43개소] 설계예산서

◎ 도 급 예 정 액 : 73,953,000원
 - 공 급 가 액 : 67,230,000원
 - 부가가치세 : 6,723,000원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시설물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2026년 00월 00일

1.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

1.1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1.1.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1.1.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1.1.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 교량
- ☐ 터널
- ☐ 옹벽
- ☐ 절토사면

1.1.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역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한결함등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 본 결과표 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등의 순서로 첨부

1.1.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 · 방법 제시)

1.1.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 교량
- ☐ 터널
- ☐ 옹벽
- ☐ 절토사면

□ 교량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상부구조	(1) 교면포장 (아스콘, 콘크리트 등)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3) 난간(방호울타리) 및 연석		
	(4) 신축이음		
	(5) 받침(강재, 탄성받침 등)		
	(6) 바닥판(RC 및 PSC / 강재)		
	(7) 거더(RC 및 PSC/ 강재)		
	(8) 가로보 및 세로보(RC/ 강재)		
하부구조	(9) 교대		
	(10) 교각		
	(11) 기초		
기 타	(12) 아치부재, 케이블, 주탑 등		
	(1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 주) 1. 현장조사 요령 참조하여 작성
2.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3.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4.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터널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설물명		관리주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근 점검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기본 시설물	갯문		
	라이닝		
	배수상태		
부대 시설물	접속터널 (연락갱, 횡갱 등)		
	옹벽		
	비탈면 (낙석보호시설, 점검로 등)		
	공동구		
	공중이 ☐ 유 이용하는 부위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터널 주변 등	인접구조물		
	근접시공 여부		
	주변 환경		
	노면		
	조명		
기 타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 주) 1. 현장조사 요령 참조하여 작성
2.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3.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4.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용벽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종점검 년월일	년 월 일	
시설물 위치	행정구역	도(시) 군(구)		면(동, 읍)	
	위치좌표	시점		종점	
시설물 규모	길이 : m		노출높이: m	면적 : m ²	
용 도					
시설물 특이사항 (주변상황)	용벽 상부				
	용벽 하부				
점 검 시 설		점 검 결 과			
지표면 노출부위 조사	손상 및 결함	결함부분	평가단위번호	결함상세	
기초지반 조사	세굴				
주변영향 인자	배수시설				
	사면상태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점검자 의견					

- 주) 1.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절토사면

정 기 안 전 점 검 표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공 년월일	년	월	일	최종점검 년월일	년 월 일
시설물 위치	행정구역	도(시) 군(구) 면(동,읍)			
	위치좌표	시점 :		종점 :	
시설물 규모	길이 :	m	높이 :	m	경사 :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사면 손상상태 조사	파괴징후	☐ 인장균열 ☐ 이완암블록 ☐ 보호시설 변형 ☐ 포행흔적 ☐ 배부름 ☐ 히빙(heaving)			
		상세현황 (위치/규모)			
	파괴현황	☐ 표층유실 ☐ 평면파괴 ☐ 토석류 ☐ 표층붕괴 ☐ 썩기파괴 ☐ 낙석 ☐ 원호파괴 ☐ 전도파괴			
		상세현황 (위치/규모)			
사면 파괴요인 조사	지반상태	구성물질 : ☐ 토사 ☐ 연약암반 ☐ 파쇄암반 ☐ 절리암반 풍 화 도 : ☐ 신선(F) ☐ 약간풍화(SW) ☐ 보통풍화(MW) ☐ 심한풍화(HW) ☐ 완전풍화(CW) ☐ 풍화잔류토(RS)			
		불연속면 : ☐ 절개면의 경사방향과 일치 (①) ☐ 수평방향 (②) ☐ 절개면 후방으로 향함 (③) ☐ 확인할수 없음 (④)			
	배수상태	배 수 공 : ☐ 유 ☐ 무 () 배수조건 :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결빙 또는 누수상태 - 상태 : ☐ 건조 ☐ 젖음 ☐ 방울로 떨어짐 ☐ 흐름 - 위치 : ☐ 하부 ☐ 중부 ☐ 상부			
		종류 위치 상태 _____ _____ _____ _____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점검자 소견					

- 주) 1. 본 점검표 다음에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첨부
 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3.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1.2 제3종시설물

1.2.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1.2.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1.2.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1.2.1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가. 일반현황					
용역명		점검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제3종
준공일		점검금액 (천원)		안전등급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한결함등					
점검 주요결과					
주요 보수·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 본 결과표 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등의 순서로 첨부

1.2.2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 ※ 작성요령
-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 · 방법 제시)

1.2.3 시설물별 체크리스트

☐ 교량, 육교

☐ 터널, 지하차도

☐ 옹벽

☐ 절토사면

□ 교량, 육교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해당없음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유무	a	b	c	d	e	
주요시설	1. 거더(RC 및 PSC / 강재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 / 강재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케이블 부재, 정착부 (정착구) 및 주변 손상상태								
	4.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5.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6.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일반시설	7.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및 데크 표면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8.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손상 상태								
	9.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11. 난간, 연석의 손상 상태								
부대시설	12.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3. 안전 및 기타시설(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14.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5.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 있음 ☐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 출렁다리는 해당 시설물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도 기술
- ※ 중대한 결함 등(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판정은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시설물편 제1장 1.1.4. 중대한 결함 등의 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한 부록을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 해당없음 : 평가부재가 없는 경우에 한함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터널, 지하차도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해 당 없 음
주 요 시 설	1. 라이닝(지하차도 기둥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2. 갯문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3.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6. 기계 및 전기설비 가동 상태								
	7.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부 대 시 설	8. 옹벽, 축대, 석축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9.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0. 안전 및 기타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11. 환기구의 손상 상태 (덮개 설치 유무 포함)								
	12.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 있음 ☐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 환기구 및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도 기술
- ※ 중대한 결함 등(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판정은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시설물편 제2장 2.1.4. 중대한 결함 등의 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한 부록을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 해당없음 : 평가부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용벽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해당 없음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주요 시설	1. 전면부 파손 및 손상상태								
	2. 전면부 철근노출 상태								
	3. 전면부 이격 상태								
	4. 배수공의 상태								
	5. 누수 상태								
	6. 뒷채움부의 유실 상태 (보강토, 석축)								
	7. 철망의 손상 상태								
	8. 채움재의 유실 상태 (돌망태)								
	9. 채움 콘크리트의 유실 상태(석축)								
	10.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11. 배부름 현상 발생 유·무								
	12. 전도/경사의 상태								
	13. 활동 상태								
일반 시설	14. 옹벽 상부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침하, 단차, 인장균열, 낙석흔적, 침출수 등 손상 상태								
	15.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시설(배수구, 측구, 집수정 등) 손상 상태								
	16. 옹벽 배면 활용부지의 침하, 균열, 세굴, 단차 등 손상 상태								
부대 시설	17. 안전시설(안전펜스 등)의 손상 상태								
	18. 보호시설(낙석방지망 등)의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 있음 ☐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 평가 시 제외항목
- 콘크리트옹벽 : 3항목, 6~9항목, 11항목
 - 보강토옹벽 : 2항목, 5항목, 7~9항목, 12항목
 - 석축 : 2항목, 5항목, 7~8항목
 - 돌망태옹벽 : 1~6항목, 11~12항목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환기구 및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도 기술

※ 중대한 결함 등(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판정은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시설물편 제13장 13.1.4. 중대한 결함 등의 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한 부록을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해당없음 : 평가부재가 없는 경우에 한함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절토사면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a	b	c	d	e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상부자연사면의 손상 상태 및 파괴 요인								
	2. 토사사면의 손상 상태 및 파괴 요인								
	3. 암반사면의 손상 상태 및 파괴 요인								
	4. 보강시설(앵커, 락볼트 등)의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5. 사면하부(이격부)의 손상 상태 및 파괴 요인								
	6. 사면 하단부 구조물(옹벽 등)의 손상 상태								
	7. 배수시설의 손상 상태								
부 대 시 설	8. 표면보호공의 손상 상태								
	9. 낙석방지시설의 손상 상태								
	10. 점검로 등 손상 상태								
평가결과		안전등급 : ☐ A ☐ B ☐ C ☐ D ☐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 있음 ☐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 있음 ☐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점검로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도 기술

※ 중대한 결함 등(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판정은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시설물편 제14장 14.1.4. 중대한 결함 등의 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한 부록을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해당없음 : 평가부재가 없는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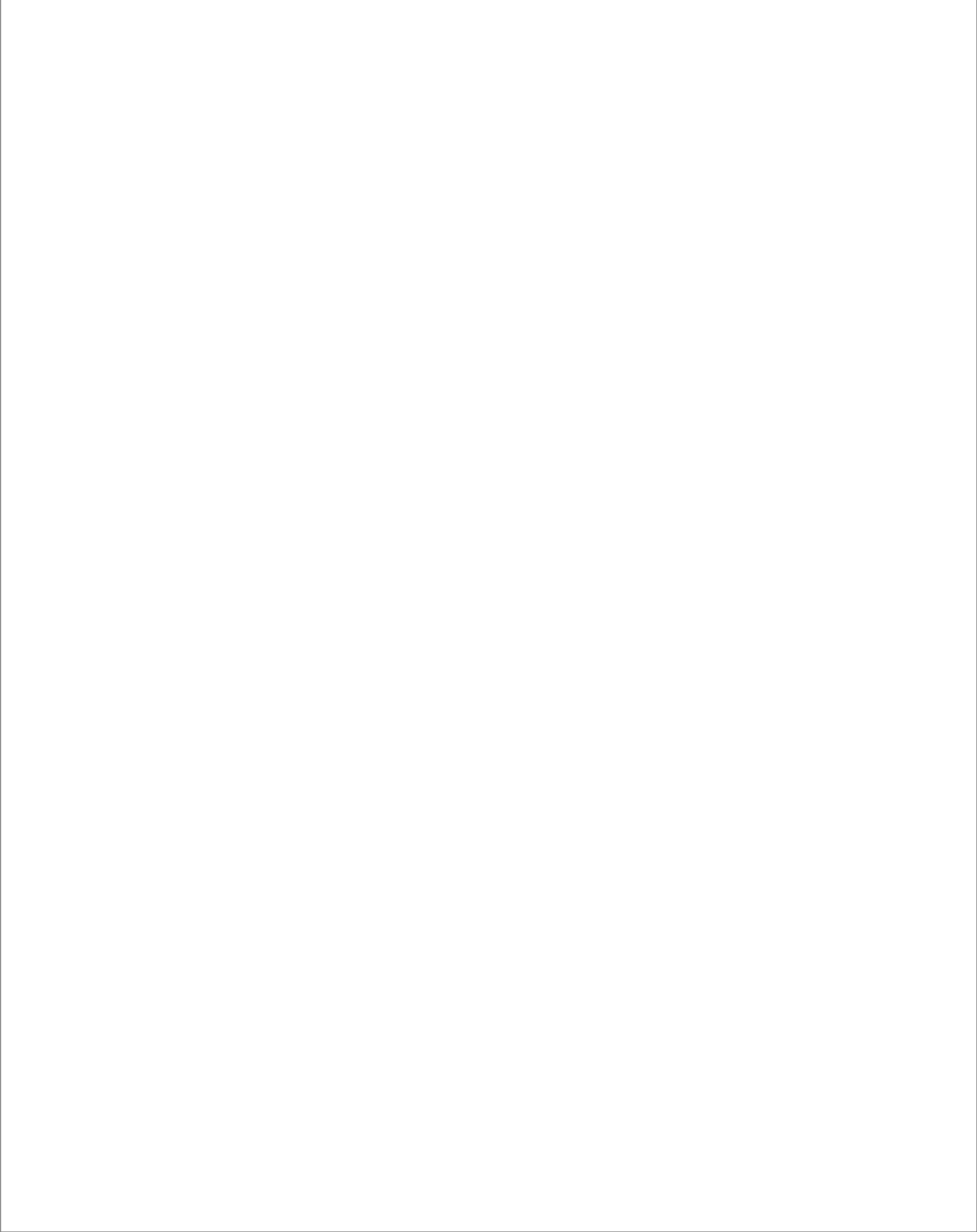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 시설물 위치도, 전경사진

위치도

전경사진



목 차

제1장 정기안전점검 개요	00
1.1. 점검목적	00
1.2.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	00
1.3. 과업수행 일정	00
1.4. 시설물 현황	00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	00
2.1.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00
2.2. 점검진단 이력	00
2.3. 보수보강 이력	00
2.4. 소결	00
제3장 현장조사	00
3.1. 일반 점검사항	00
3.2. 부분별 점검결과	00
3.3. 주요 외관조사 사진	00
3.4. 현장조사 결과분석	00
제4장 종합결론	00
4.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00
4.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00
4.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00
4.4. 기타 필요한 사항	00
부록	
1.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2. 외관조사 사진첩	

제1장 정기안전점검 개요

1.1 점검목적

이 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1.2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

1.2.1 점검범위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분석
- 3) 종합결론 도출

1.2.2 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1) 준공도면 및 관련자료
- 2) 시설물관리대장
- 3)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검토 분석
- 4) 보수·보강이력 검토 분석

나. 현장조사 및 분석

- 1) 외관 결함 및 손상 등 외관조사
- 2) 결함 및 손상의 진행사항
- 3) 조사결과 분석

다. 종합결론

- 1)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 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1.3 과업수행 일정

-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1.4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월일		관리번호	
위치			
관리주체		관리책임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주용도	
기초형식		구조형식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 규모 및 제원 추가사항: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모 및 제원에 대한 특이사항 등을 기입
※ 건축물이외의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을 참고하여 규모 및 제원이 나타나도록 표 형식 수정 가능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

2.1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 보유현황

구분	FMS 제출여부	미제출 사유
시설물관리대장	☐ 제출 ☐ 미제출	
준공도서	☐ 대상-제출 ☐ 비대상-제출 ☐ 대상-미제출 ☐ 비대상-미제출	
감리보고서	☐ 대상-제출 ☐ 비대상-제출 ☐ 대상-미제출 ☐ 비대상-미제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보수보강 자료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사고이력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FMS 제출여부를 체크

※ FMS 부분제출(준공도서)한 경우 대상-미제출에 체크하고, 미제출 항목 및 사유 작성

※ 제출여부는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설계도서/보고서에서 확인

2.2 점검·진단 이력

구 분	완료일	금액(천원)	안전등급

※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유지관리 실적 > 점검·진단 실적에서 확인

2.3 보수보강 이력

공사명	공사구분	보수보강	설계자	시공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공사비(천원)	책임기술자

※ www.fms.or.kr > 시설물관리 > 해당 시설물 > 유지관리 실적 > 보수·보강 실적에서 확인

2.4 소결

- 수집된 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 미제출자료에 대한 제출 계획 등

제3장

현장조사

3.1 일반 점검사항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은 [붙임]에서 해당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성]

시 설 물 명		관 리 주 체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최종점검년월 일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건축 구조물	용도변경		
	구조부재 변경		
	주변조건 변경		
	균열발생현황		
	누수·백태현황		
	철근노출 및 부식		
	강재구조 노후		
	마감재		
	기타		
부대 시설	지반(포장)		
	옹벽(축대)		
	담장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유 ☐ 무	☐ 보수필요 ☐ 보수불필요
	천창 및 채광창 상태		
	기타		
기타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 ※ 3.2절(부분별 점검결과)를 점검항목별로 요약하여 기입
- ※ 상태변화(손상, 결함) 등의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술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설치 유,무 및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보수의 필요성 여부를 체크
- ※ 점검항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2 부분별 점검결과

[illegible]

3.3 주요 외관조사 사진

사진번호	사진설명(조사위치, 손상유형)
사진번호	사진설명(조사위치, 손상유형)

3.4 현장조사 결과분석

※ 결함 및 손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기술

4.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에의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종합의견 기술

4.2 정밀안전점검,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구조적 결함 및 손상의 발생과 진행 여부, 중대한 결함 발생 등을 고려한 사용제한 필요성과 정밀안전점검 또는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

4.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진행성인 결함·손상 및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특별히 유지관리가 필요 사항 기술

4.4 기타 필요한 사항

1. 외관조사 사진첩

- ※ 신규발생 결함의 상태
- ※ 기존 결함의 진행성 확인
- ※ 보수·보강 실시 부위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전차 점검시와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수록

2.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 www.fms.or.kr > 아이디 접속 > 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 PDF파일로 저장

※ 보고서 폴더에는 pdf형식의 파일로 저장

pdf변환 방법: 한글 파일 작성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 첨부

하자보수 물량산출표 및 소요예산 총괄표 양식

【첨 부1(엑셀)】

(단위 : 원)

[illegible]

(단위 : 원)

[illegible]

(단위 : 원)

[illegible]

하 자 발 생 현 황

◆ 공사명 :

◆ 위 치 :

◆ 시공사 :

◆ 준공일 :

◆ 하자내용

하자발생부분	위 치	주요 하자발생 내역	비고
00교(상)	00 00 00	- 바닥판하면 : 균열, 박락 등 - 가로보 : 재료분리 등	
		-	
		-	
		-	
		-	

1. 00교

구분	손상내용	보수방안	단위	보수 물량	비고
바닥판 하면	망상균열	표면처리	m ²	0000	
거더					
교대					
...	...	...	...	...	...
교각					

2. 00교

구분	손상내용	보수방안	단위	보수 물량	비고
바닥판 하면	망상균열	표면처리	m ²	0000	
교대					
...	...	...	...	...	...
교각					

사 진 대 지(하자)

< 사 진 >	< 사 진 >
< 설 명 >	< 설 명 >
< 사 진 >	< 사 진 >
< 설 명 >	< 설 명 >
< 사 진 >	< 사 진 >
< 설 명 >	< 설 명 >
< 사 진 >	< 사 진 >
< 설 명 >	< 설 명 >

노선명	위치	시설물 명	주요 보수공법	보수 비용	비고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단면보수, 신축 이음 교체 등	000,000,000,000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단면보수, 신축 이음 교체 등	000,000,000,000	
...	...	...	...	...	...
국도0호선	거창 남하 대야	00교	단면보수, 신축 이음 교체 등	000,000,000,000	

【첨 부4(한글)】

도로 및 터널 보수 소요액

[illegible]

00국토관리사무소

① 00교 보수공사

1. 사업위치

- 국도00호선 00시 00면 00리(00교)

2. 사업개요

- 공사내용 : 단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등
- 공사연장 : 000m
- 공사금액 : 00백만원

3. 예산요구 사유

- '18년 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총사업비	'17까지	'18년	'19년	'20이후	비고
00	-	-	00	-	

4. 향후추진계획

-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실시설계완료 후 발주 예정

사 진 대 지

위 치 도	국도00호선 00군 00면 00리
사 진	균열 발생, 신축이음 파손 등...